

2015년 제8차 사규심의위원회 심의안 요지

연번	개정사규	주요내용	페이지
1	경영계획 및 심사분석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정명 변경(경영계획 및 심사분석규정 → 경영계획 및 사업관리규정) ○사업관리도입에 따른 단위사업관리와 리스크관리에 관한 내용 신설(사업관리=심사분석+단위사업관리+리스크관리)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 신설 	2
2	소송업무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기환송·재심·재소사건의 착수금기준 문구변경(‘원심 착수금의 1/2 이하’ → ‘별표1에 따른 착수금의 1/2’) ○소송업무규정 중 소송위임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을 신설 	11
3	인사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승진관련 기간산정시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않으나 강등 처분에 대한 제약은 없어 관련 규정정비 ○채용비위 관련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 집행이 종료후 5년간 포상 제한 	16
4	인사규정 시행내규(안)	<p>(채용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성(인성)검사를 인성검사로 대체, 직무능력검사를 필기시험에 포함 ○면접시험 평가사항을 사장이 정하도록 개선 ○면접시험의 반영비율을 40%에서 50%로 상향조정 ○신원진술서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결격사유조항으로 대체 <p>(징계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어폭력 행위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마련 ○임용인사 관련 부당개입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기준 마련 및 입찰비리 관련자 처벌강화 ○직무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의례적인 금품·향응수수의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청렴의무 위반 처리 기준을 구체화 ○징계감경 제외대상자에 성희롱 가해자 등 추가 	20

社 規 審 議 委 員 會	
審 議 番 號	第 1 號

심 의 안 건	경 영 계 획 및 심 사 분 석 규 정 (안)
---------	---------------------------

입 안 부 서	재 정 전 략 팀
---------	-----------

경영계획 및 심사분석규정 개정안 제안요지

1. 개정이유

- 사업관리제도 도입에 따라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 전 구성원이 공유하여 경영 성과를 달성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체계화하고 명칭을 「경영계획 및 심사분석 규정」에서 「경영계획 및 사업관리규정」로 변경
 - ※ 사업관리 = 심사분석(기존제도) + 단위사업관리(신설) + 리스크관리(신설)
-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효율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업관리를 통해 공정관리와 재무관리를 일원화하여 사업목표를 관리하고, 사업리스크를 예방 또는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2. 개정내용

- 사업관리에 대한 사항 중 신설되는 내용, 단위사업관리와 리스크관리에 대한 정의, 기능, 기준을 신설(안 제2조~제4조)
- 단위사업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 (안 제18조~제20조 신설)
- 리스크관리를 위한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 (안 제21조~제26조 신설)

3. 참고사항

- 가.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6조 제1항(입안)
- 나. 예산조치 - 조치(외부위원 회의 참석 수당 등)
- 다. 합 의 - (1) 관계부서 (전 부서)
(2) 부패영향평가
- 라. 절 차 - 사규관리규정 제2장 제정 및 개폐 절차 이행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비 고
경영계획 및 <u>심사분석</u> 규정	경영계획 및 <u>사업관리</u> 규정	○심사분석을 보다 넓은 의미인 사업관리로 규정함 (사업관리 ⊃ 심사분석, 단위사업관리, 리스크관리)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에스에이치 (SH)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경영 계획수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업계획에 대한 <u>심사분석</u> 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경영성과를 달성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에스에이치 (SH)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경영 계획수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업계획에 대한 <u>관리를</u> 통하여 효과적으로 경영성과를 달성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규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을 규정함. (심사분석 → 관리)
제 2 조 (정의) (생략) 1.~3. (생략)	제 2 조 (정의)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u>4. “사업관리”란 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심사분석, 단위사업 관리(Project Management),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등을 통해 경영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고 이를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u> <u>가. (현행 제2조제4호와 같음)</u>	○사업관리 안에 포함된 심사분석, 단위사업관리, 리스크관리에 대해 심사분석 정의는 기존 내용에 변경 없이 사업관리 하위 조문으로 이동하고, 단위사업관리와 리스크관리에 대한 개념 정의
4. “심사분석”이라 함은 사업계획에 대한 진도와 성과를 대조, 평가함으로써 경영관리의 모순과 비능률을 시정하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의 수집, 분석, 평가 및 시정조치를 말한다.	<u>나. “단위사업관리”라 함은 단위사업 (Project)별로 개발계획 수립부터 공급까지 추진일정을 통합 관리하고, 사업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공사 일정, 사업 수지 등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u> <u>다. “리스크 관리”라 함은 각 단위사업 별로 사업리스크를 식별하고 식별된 사업리스크가 사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검토하여 이를 최소화 또는 대비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u>	
5. (생략)	5. (현행과 같음)	

현 행	개정안	비 고
<p>제 3 조 (기능) ①~②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 3 조 (기능)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단위사업관리가 가지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u></p> <p>1. <u>공정관리 기능 : 공종을 망라한 통합적 추진일정 관리를 통하여 사업 목표를 달성하는 기능</u></p> <p>2. <u>수지관리 기능 : 사업여건 변동 등에 따른 사업수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공사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을 검토·보고하는 기능.</u></p> <p>④ <u>리스크 관리는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상황이나 이미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관리 및 자문을 수행하는 기능을 한다.</u></p>	<p>○ 단위사업관리와 리스크관리의 기능 정의</p>
<p>제 4 조 (기준) ①~②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 4 조 (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단위사업관리는 사업기간의 적정성, 분야별 진행상황, 계획 변경 등에 따른 재정적 영향 등을 검토하여 사업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다.</u></p> <p>1. <u>투자심사,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사업시행이 확정된 사업</u></p> <p>2. <u>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u></p> <p>④ <u>리스크 관리는 경영계획 이행 및 사업관리를 저해하는 사건 발생을 예방하고 식별된 리스크를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며, 관리 대상 및 범위는 본조 제3항제1호 내지 제2호와 같다.</u></p>	<p>○ 단위사업관리와 리스크관리의 기준 정의</p>
<p>제 5 조 (계획수립) ① 기획경영본부장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u>본부·실, 홍보처 및 도시연구소</u>(이하 “각 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 5 조 (계획수립) ① 기획경영본부장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u>본부·실, 전략홍보처 및 SH도시연구소</u>(이하 “각 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 현행 직제에 맞게 명칭 변경</p>
<p>제8조의2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생략)</p>	<p>제9조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현행과 같음)</p>	<p>○ 조번호 변경</p>

현 행	개정안	비 고
<p><신 설> <신 설></p>	<p><u>제 4 장 단위사업관리</u> <u>제18조 (관리내용) ① 단위사업관리는</u> <u>기획경영본부 재정전략팀에서 주관</u> <u>되어 총괄하며, 관련 부서는 자료 제출,</u> <u>설명 요구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u> <u>② 총괄부서는 각 사업 부서에서 제출한</u> <u>목표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관리하되,</u> <u>각 항목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u> <u>적정한 사업관리(일정관리, 재무관리)가</u> <u>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u></p> <p><u>1. 추진일정 : 심사분석과 연동하여</u> <u>개발계획부터 공급까지 통합 추진일정</u> <u>작성 및 일정 준수 여부 관리</u> <u>2. 사업수지 : 투자심사, 이사회 의결</u> <u>사항을 기준으로 사업수지 변경사항</u> <u>발생 또는 예상시 관련 내용 관리</u></p>	<p>○ 단위사업관리 에 구체적인 부 분을 규정함</p>
<p><신 설></p>	<p><u>제 19조 (사업관리의 구분) 단위사업별</u> <u>성격, 규모, 투입비용 등에 따라 아래와</u> <u>같이 구분하여 관리하되, 필요시 구체적인</u> <u>관리 방법은 따로 정한다.</u></p> <p><u>1. 관리대상 사업지구 : 투자심사, 이사회</u> <u>의결 등을 거쳐 사업시행이 확정된</u> <u>사업</u> <u>2. 중점 관리대상 사업지구 : 고도의</u> <u>리스크 관리가 요구되거나 손실이</u> <u>예상되는 사업, 사업결과가 공사의</u> <u>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u> <u>예상되는 사업 등 사장이 인정한 사업</u></p>	
<p><신 설></p>	<p><u>제 20조 (결과보고) ① 단위사업관리</u> <u>결과 등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결과</u> <u>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그 과정</u> <u>에서 식별된 리스크 등에 대하여는</u> <u>필요시 리스크관리실무 위원회의 자</u> <u>문을 구할 수 있다.</u> <u>② 관리대상 사업의 준공 후 추진일정,</u> <u>사업수지 변동 현황, 발생 리스크 및</u> <u>처리결과 등에 대한 사업관리 결과보</u> <u>고서를 작성하고, 각 부서와 공유한다.</u></p>	<p>○ 단위사업관리 에 구체적인 부 분을 규정함</p>

현 행	개정안	비 고
<신 설>	<u>제5장 리스크 관리</u>	○ 리스크 관리에 구체적인 부분을 규정함
<신 설>	<u>제21조 (용어) 본 내규의 용어정의는 아래 각 호와 같다.</u> <u>1. 리스크는 사업의 기획, 진행 또는 유지관리에 있어 각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잠재적 상황이나 이미 발생한 문제점을 말한다.</u> <u>2. 위원회 운영팀은 위원회를 소집, 개최하는 부서로서 기획경영본부 전략기획처 재정전략팀을 말한다.</u> <u>3. 주관사업본부는 관리대상사업의 기획, 진행을 주관하는 본부 및 실을 말한다.</u>	
<신 설>	<u>제22조 (리스크관리) ① 추가, 변동 또는 해소된 사업리스크의 식별은 주관사업본부 또는 산하 사업별 담당팀 (이하 “사업담당팀”)에 의해 수시로 수행된다.</u> <u>② 식별결과는 리스크 관리현황 최신화를 통해 주관사업본부장에게 즉시 보고되어야 하며 주관사업본부장은 식별결과에 대한 검토를 통해 리스크 해소 대책을 수립한다.</u> <u>③ 주관사업본부 또는 산하 사업담당팀은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 또는 리스크관리위원회 자문사항을 참고하여 리스크해소 대책을 수립한다.</u> <u>④ 주관사업본부 또는 산하 사업담당팀은 본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리스크해소 대책 수립 후 위원회 운영팀으로 즉시 송부한다.</u>	

현 행	개정안	비 고
<p><신 설></p>	<p>제23조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 ① 식별된 리스크에 대한 실무검토를 위하여 매 분기마다 리스크 관리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p> <p>②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는 리스크관리 위원회에 앞서 리스크에 대해 검토하고 자문한다.</p> <p>③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 위원은 관련부서의 처장 또는 팀장급 직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기획경영본부장이, 부위원장은 전략기획처장이 되고, 간사는 재정전략팀장으로 한다.</p>	<p>○ 리스크 관리에 구체적인 부분을 규정함</p>
<p><신 설></p>	<p>제24조 (리스크관리위원회) ① 리스크 관리위원회는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 또는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운영한다.</p> <p>②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관리 대상사업의 사업리스크 식별, 식별된 리스크에서 기인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또는 대비할 수 있는 사항 등에 대해 자문한다.</p> <p>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 5인 이내, 서울시 관련부서장 2인 이내, 내부위원 3인 이내로 구성한다.</p> <p>④ 위원장은 사장이 되고 나머지 내부위원은 실·처장으로 하고, 간사는 전략기획처장으로 한다.</p> <p>⑤ 서울시 관련부서장은 서울시 소속의 관리대상사업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p> <p>⑥ 위원회 운영팀장은 위원회 개최 시 아래 각 호를 수행한다.</p> <p>1. 각 실·처장급 책임자의 관리대상사업 관련 여부를 검토하여 참석이 요구되는 내부위원 구성</p> <p>2. 외부위원으로 위촉될 외부전문가 구성</p>	

현 행	개정안	비 고
<신 설>	제25조 (비밀유지) 참여위원 중 외부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인지의 비밀을 누설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 하여 보안서약서(별지 제1호서식)에 본인의 성명 등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회 운영팀으로 제출한다.	
<신 설>	제26조 (외부 참여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 위 내에서 회의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社 規 審 議 委 員 會	
審 議 番 號	第 2 號

심 의 안 건	소 송 업 무 규 정 (안)
---------	-----------------

입 안 부 서	법 무 팀
---------	-------

소송업무규정 개정안 제안요지

1. 개정이유

- '15.9.21 개정된 소송업무규정의 변호사보수기준 개정취지는 개정이후 위임하는 사건을 개정된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었으나 파기환송·재심·재소사건의 착수금감액규정은 '원심착수금의 1/2'로 규정하고 있어, 개정 후에도 개정 전 산정된 원심착수금의 1/2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을 개정취지에 맞게 보완하고, 소송업무규정 중 소송위임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을 신설하여 소송업무 수행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파기환송·재심·재소사건 착수금기준 문구변경('원심 착수금의 1/2 이하' → '별표1에 따라 산정한 착수금의 1/2')(안 제45조)
- 소송업무규정 중 소송위임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을 신설(안 별지 제3호서식)
 - 소송물 가액변경시, 소송위임계약서 제11조에 따라 소송업무규정 별표1의 변호사 보수기준에 의하여 변경계약없이 착수금을 변경하던 것을 계약서 제2조에 괄호로 명시함.
 - 소송업무규정 별표1에 의하여 신청사건 중 변론기일·심문기일 없는 가압류, 가처분사건은 성공보수금 지급에서 제외하는 별표1의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서 제4조에 단서로 신설함.

3. 참고사항

- 가.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6조 제1항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합 의 : 해당없음
- 라. 절 차 : 사장결재 후 사장명의로 공포.시행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비고
<p>제 45 조 (계속위임보수)</p> <p>①원심 위임사건을 같은 변호사에게 계속 위임할 경우 상급심의 보수도 원심 보수와 같다. 다만, 소송물가액이 증감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동일목적물에 대한 재소송 또는 재심사건을 같은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원심 착수금의 1/2 이하로 한다.</p>	<p><u>제 45 조 (과기환송사건 등의 착수금)</u></p> <p><삭 제></p> <p><u>과기환송·재심·재소사건을 이전 사건 수입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착수금은 별표1에 따라 산정한 착수금의 1/2로 한다.</u></p>	<p>o (제1항 : 상소심의 계속위임보수)</p> <p>-2015.9.24 개정 전 상소시 동일변호사에 대한 위임보수는 감액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 원심과 상소심의 보수가 동일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 위임보수를 규정하는 제44조와 중복적인 규정이므로 삭제</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소송업무규정제44조 (위임보수) ①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게 소송 사건 수행을 위임하는 경우의 위임보수는 … 「민사소송등인지규칙」에서 정한 소송물가액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수입변호사와 협의하여 결정·지급한다. 다만, 소가가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억원으로 한다.</p> </div> <p>o (제2항 : 과기환송·재심·재소사건의 위임보수)</p> <p>-재심·재소 사건 등을 이전 사건 수행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일손이 덜 드는 점을 고려하여 착수금을 감액하는 규정임.</p> <p>-현행 규정은 ‘원심’ 착수금의 1/2 이하로 되어 있어서 착수금 조항(별표1)이 개정된 경우에도 개정 전 원심 착수금의 1/2 이하를 지급해야 함</p> <p>-이 조항은 ‘위임시’의 착수금을 기준으로 1/2로 감액하려는 취지이므로 ‘별표1에 따라 산정한 착수금의 1/2’로 개정함이 타당</p> <p>-과기환송 사건도 같은 내용으로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조에 추가할 필요성 있음</p>

현행	개정안	비고																																																						
<p>〈별표 1(제44조 제1항 관련)〉 변호사보수 산정기준</p> <p>1. 본안사건의 착수금 가. 민사 및 행정사건 .민사 및 행정사건의 착수금의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다. (소송물 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의함) 다만, 당해 사건의 중요성 및 난이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p> <table border="1" data-bbox="94 464 913 981"> <thead> <tr> <th>소송물가액</th> <th>산정기준</th> <th>지급기준액</th> </tr> </thead> <tbody> <tr> <td>4,000만원 이하</td> <td></td> <td>1,300,000원</td> </tr> <tr> <td>4,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td> <td>$(130\text{만원} + (\text{소송물가액} - 4,000\text{만원}) \times 5 / 100 \times 1/2)$</td> <td>1,300,000 ~ 1,550,000원</td> </tr> <tr> <td>5,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td> <td>$(155\text{만원} + (\text{소송물가액} - 5,000\text{만원}) \times 4 / 100 \times 1/2)$</td> <td>1,550,000 ~ 1,950,000원</td> </tr> <tr> <td>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td> <td>$(195\text{만원} + (\text{소송물가액} - 7,000\text{만원}) \times 3 / 100 \times 1/2)$</td> <td>1,950,000 ~ 2,400,000원</td> </tr> <tr> <td>1억원 초과 2억원 이하</td> <td>$(240\text{만원} + (\text{소송물가액} - 1\text{억원}) \times 2 / 100 \times 1/2)$</td> <td>2,400,000 ~ 3,400,000원</td> </tr> <tr> <td>2억원 초과 5억원 이하</td> <td>$(340\text{만원} + (\text{소송물가액} - 2\text{억원}) \times 1 / 100 \times 1/2)$</td> <td>3,400,000 ~ 4,900,000원</td> </tr> <tr> <td>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td> <td>$(490\text{만원} + (\text{소송물가액} - 5\text{억원}) \times 0.5 / 100 \times 1/2)$</td> <td>4,900,000 ~ 16,150,000원</td> </tr> <tr> <td>50억원 초과</td> <td></td> <td>16,150,000원</td> </tr> </tbody> </table> <p>※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나. 기타 소송사건 .형사사건 기타 특수소송사건은 수임변호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u>다. 상급심의 착수금</u> <u>제2심 및 제3심의 착수금의 지급기준은 제1심의 지급기준과 같다.</u> <u>파기환송심의 경우 원심착수금의 1/2로 지급한다.</u> 라. 소송물 가액이 증감된 경우에는 그 증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2. ~ 4. (생략)</p>	소송물가액	산정기준	지급기준액	4,000만원 이하		1,300,000원	4,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30\text{만원} + (\text{소송물가액} - 4,000\text{만원}) \times 5 / 100 \times 1/2)$	1,300,000 ~ 1,550,000원	5,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155\text{만원} + (\text{소송물가액} - 5,000\text{만원}) \times 4 / 100 \times 1/2)$	1,550,000 ~ 1,950,000원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95\text{만원} + (\text{소송물가액} - 7,000\text{만원}) \times 3 / 100 \times 1/2)$	1,950,000 ~ 2,400,000원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240\text{만원} + (\text{소송물가액} - 1\text{억원}) \times 2 / 100 \times 1/2)$	2,400,000 ~ 3,400,000원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40\text{만원} + (\text{소송물가액} - 2\text{억원}) \times 1 / 100 \times 1/2)$	3,400,000 ~ 4,900,000원	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490\text{만원} + (\text{소송물가액} - 5\text{억원}) \times 0.5 / 100 \times 1/2)$	4,900,000 ~ 16,150,000원	50억원 초과		16,150,000원	<p>〈별표 1(제44조 제1항 관련)〉 변호사보수 산정기준</p> <p>1. 본안사건의 착수금 가. 민사 및 행정사건 .민사 및 행정사건의 착수금의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다. (소송물 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의함) 다만, 당해 사건의 중요성 및 난이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p> <table border="1" data-bbox="929 464 1771 981"> <thead> <tr> <th>소송물가액</th> <th>산정기준</th> <th>지급기준액</th> </tr> </thead> <tbody> <tr> <td>4,000만원 이하</td> <td></td> <td>1,300,000원</td> </tr> <tr> <td>4,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td> <td>$(130\text{만원} + (\text{소송물가액} - 4,000\text{만원}) \times 5 / 100 \times 1/2)$</td> <td>1,300,000 ~ 1,550,000원</td> </tr> <tr> <td>5,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td> <td>$(155\text{만원} + (\text{소송물가액} - 5,000\text{만원}) \times 4 / 100 \times 1/2)$</td> <td>1,550,000 ~ 1,950,000원</td> </tr> <tr> <td>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td> <td>$(195\text{만원} + (\text{소송물가액} - 7,000\text{만원}) \times 3 / 100 \times 1/2)$</td> <td>1,950,000 ~ 2,400,000원</td> </tr> <tr> <td>1억원 초과 2억원 이하</td> <td>$(240\text{만원} + (\text{소송물가액} - 1\text{억원}) \times 2 / 100 \times 1/2)$</td> <td>2,400,000 ~ 3,400,000원</td> </tr> <tr> <td>2억원 초과 5억원 이하</td> <td>$(340\text{만원} + (\text{소송물가액} - 2\text{억원}) \times 1 / 100 \times 1/2)$</td> <td>3,400,000 ~ 4,900,000원</td> </tr> <tr> <td>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td> <td>$(490\text{만원} + (\text{소송물가액} - 5\text{억원}) \times 0.5 / 100 \times 1/2)$</td> <td>4,900,000 ~ 16,150,000원</td> </tr> <tr> <td>50억원 초과</td> <td></td> <td>16,150,000원</td> </tr> </tbody> </table> <p>※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나. 기타 소송사건 .형사사건 기타 특수소송사건은 수임변호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u>다. 파기환송·재심·재소 사건</u> <u>가항의 착수금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착수금의 1/2로 지급한다.</u> 라. 소송물 가액이 증감된 경우에는 그 증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2. ~ 4. (현행과 같음)</p>	소송물가액	산정기준	지급기준액	4,000만원 이하		1,300,000원	4,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30\text{만원} + (\text{소송물가액} - 4,000\text{만원}) \times 5 / 100 \times 1/2)$	1,300,000 ~ 1,550,000원	5,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155\text{만원} + (\text{소송물가액} - 5,000\text{만원}) \times 4 / 100 \times 1/2)$	1,550,000 ~ 1,950,000원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95\text{만원} + (\text{소송물가액} - 7,000\text{만원}) \times 3 / 100 \times 1/2)$	1,950,000 ~ 2,400,000원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240\text{만원} + (\text{소송물가액} - 1\text{억원}) \times 2 / 100 \times 1/2)$	2,400,000 ~ 3,400,000원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40\text{만원} + (\text{소송물가액} - 2\text{억원}) \times 1 / 100 \times 1/2)$	3,400,000 ~ 4,900,000원	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490\text{만원} + (\text{소송물가액} - 5\text{억원}) \times 0.5 / 100 \times 1/2)$	4,900,000 ~ 16,150,000원	50억원 초과		16,150,000원	<p>○ (다항) -현행 규정은 ‘원심’ 착수금의 1/2 이하로 되어 있어서 착수금 산정기준(별표1 가항)이 개정된 경우에도 개정 전 원심 착수금의 1/2 이하로 해석될 우려가 있음 -이 조항은 ‘위임시’의 착수금을 기준으로 1/2로 감액하려는 취지이므로 ‘별표1에 따라 산정한 착수금의 1/2로 개정함’이 타당</p>
소송물가액	산정기준	지급기준액																																																						
4,000만원 이하		1,300,000원																																																						
4,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30\text{만원} + (\text{소송물가액} - 4,000\text{만원}) \times 5 / 100 \times 1/2)$	1,300,000 ~ 1,550,000원																																																						
5,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155\text{만원} + (\text{소송물가액} - 5,000\text{만원}) \times 4 / 100 \times 1/2)$	1,550,000 ~ 1,950,000원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95\text{만원} + (\text{소송물가액} - 7,000\text{만원}) \times 3 / 100 \times 1/2)$	1,950,000 ~ 2,400,000원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240\text{만원} + (\text{소송물가액} - 1\text{억원}) \times 2 / 100 \times 1/2)$	2,400,000 ~ 3,400,000원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40\text{만원} + (\text{소송물가액} - 2\text{억원}) \times 1 / 100 \times 1/2)$	3,400,000 ~ 4,900,000원																																																						
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490\text{만원} + (\text{소송물가액} - 5\text{억원}) \times 0.5 / 100 \times 1/2)$	4,900,000 ~ 16,150,000원																																																						
50억원 초과		16,150,000원																																																						
소송물가액	산정기준	지급기준액																																																						
4,000만원 이하		1,300,000원																																																						
4,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30\text{만원} + (\text{소송물가액} - 4,000\text{만원}) \times 5 / 100 \times 1/2)$	1,300,000 ~ 1,550,000원																																																						
5,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155\text{만원} + (\text{소송물가액} - 5,000\text{만원}) \times 4 / 100 \times 1/2)$	1,550,000 ~ 1,950,000원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95\text{만원} + (\text{소송물가액} - 7,000\text{만원}) \times 3 / 100 \times 1/2)$	1,950,000 ~ 2,400,000원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240\text{만원} + (\text{소송물가액} - 1\text{억원}) \times 2 / 100 \times 1/2)$	2,400,000 ~ 3,400,000원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40\text{만원} + (\text{소송물가액} - 2\text{억원}) \times 1 / 100 \times 1/2)$	3,400,000 ~ 4,900,000원																																																						
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490\text{만원} + (\text{소송물가액} - 5\text{억원}) \times 0.5 / 100 \times 1/2)$	4,900,000 ~ 16,150,000원																																																						
50억원 초과		16,150,000원																																																						

현행	개정안	비고
<p><별지 제3호서식(제18조제2항 관련)> <u>소송 위임 계약서</u> (생략) 제 1 조 (생략) 제 2 조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위임사무처리의 착수금으로 금 _____ 원을 지급한다. 제 3 조 (생략) 제 4 조 위임사무처리가 전부승소일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착수금과 같은 금액의 성공보수금을 지급하며 일부승소(50% 이상)일 경우에는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제 5 조 ~ 제 10 조 (생략) 제 11 조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임인”의 소송업무규정에 의한다. 이 계약을 증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위임인”과 “수임인”은 각 1통씩 보관한다. 20 . . . “위임인”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에스에이치공사 사장 ○○○ (인) “수임인” 주소 : 변호사(법무법인) ○○○ (인)</p>	<p><별지 제3호서식(제18조제2항 관련)> <u>소송 위임 계약서</u> (현행과 같음) 제 1 조 (현행과 같음) 제 2 조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위임사무처리의 착수금으로 금 _____ 원을 지급한다. <u>(소송물 가액이 변경된 경우 위임인 소송업무규정에 따라 착수금을 변경하되,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수임인의 청구로 같음한다.)</u> 제 3 조 (현행과 같음) 제 4 조 위임사무처리가 전부승소일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착수금과 같은 금액의 성공보수금을 지급하며 일부승소(50% 이상)일 경우에는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u>(변론이나 심문기일 없는 가압류, 가처분 사건 제외)</u> 제 5 조 ~ 제 10 조 (현행과 같음) 제 11 조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임인”의 소송업무규정에 의한다. 이 계약을 증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위임인”과 “수임인”은 각 1통씩 보관한다. 20 . . . “위임인”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에스에이치공사 사장 ○○○ (인) “수임인” 주소 : 변호사(법무법인) ○○○ (인)</p>	<p>o(제2조 제2문 신설)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으로 소가 가 변경될 경우 그에 따라 변호사에 줄 착수금도 변경됨 -그러나 소송기술상 청구취지 변경은 빈번히 일어나므로, 매번 이에 따라 착수금을 변경하여 소송위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소송종료후 계약서 제11조에 의거 소송업무규정에 따라 보수를 정산하는 현실을 반영함 -최근 소송 상대방이 시의원 등에게 민원을 넣어 이를 문제 삼은 바 있어 오해를 없애기 위하여 계약서에 반영 o제4조 -현행 소송업무규정 별표1 3의 가항 내용을 소송위임계약서에 반영</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소송업무규정 별표 1 3. 각종 신청사건 가.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사건 · 가압류 및 가처분 사건은 착수금으로 50만원을 지급한다. · 변론이나 심문기일을 거치는 가압류 및 가처분 사건은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으로 각각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중요성과 난이도가 높은 사건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각각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p> </div>

社 規 審 議 委 員 會	
審 議 番 號	第 3 號

심 의 안 건	인사규정(안)
---------	---------

입 안 부 서	인사팀
---------	-----

인사규정 개정안 제안요지

1. 개정이유

- 채용비위에 연루되어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한 포상 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승진소요년수, 승급소요기간 산정 시 정직처분기간은 포함하지 않고, 그 기간 동안 승급 제한을 받고 있으나 정직 보다 징계수위가 높은 강등처분에 대한 제약은 없어 형평성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22조 제3항, 안 제24조 제3항, 안 제24조의2 제1항)
- ‘투자·출연기관 혁신방안’(서울시장방침 제349호, 2014.12.10.)에서 요구한 채용비위 관련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 처분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포상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채용비위를 엄중히 경고하고자 함(안 제40조의2)

3. 참고사항

-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6조 제1항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합 의 : 해당없음
- 절 차 : 사장 결재 후 사장명의로 공포·시행
- 기타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개정사유 및 의견 등)
제 22 조 (승진소요년수)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승진소요년수 산정에 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u>정직처분기간</u> 은 <u>포함하지 아니한다.</u> (단서생략) ④·⑤ (생 략)	제 22 조 (승진소요년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정직처분기간</u> <u>(강등처분에 따른 정직기간 포함)은 포함하지</u> <u>아니한다.(단서생략)</u> ④·⑤ (현행과 같음)	-일상감사 의견을 수용하여(행정감사팀-2908호, 2015.10.28.), 승진소요년수 산정 시 정직처 분기간은 포함하지 않으나, 정직 보다 징계수 위가 높은 강등처분에 대한 제약은 없어 형 평성 차원에서 강등처분기간 또한 승진소요 년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 개정
제 24 조 (정기승급) ①~② (생략) ③ 제1항의 승급소요기간 산정에서 휴직기 간, 직위해제기간, <u>정직처분기간</u> 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단서생략)	제 24 조 (정기승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정직처분기간(강등처분</u> <u>에 따른 정직기간 포함)은 포함하지 아니한</u> <u>다.(단서생략)</u>	-일상감사 의견을 수용하여(행정감사팀-2908호, 2015.10.28.), 승급소요기간 산정 시 정직처 분기간은 포함하지 않으나, 정직 보다 징계수 위가 높은 강등처분에 대한 제약은 없어 형 평성 차원에서 강등처분기간 또한 승급소요 기간 산정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 개정
제 24 조의2 (승급제한) ① <u>정직처분기간</u> , 직위 해제, 휴직중에 있는 자는 해당기간동안승급 을 제한한다. (단서생략) ② (생략)	제 24 조의2 (승급제한) ① <u>정직처분기간(강등</u> <u>처분에 따른 정직기간 포함)</u> , 직위해제, 휴직 중에 있는 자는 해당기간동안승급을 제한한 다.(단서생략) ② (현행과 같음)	-일상감사 의견을 수용하여(행정감사팀-2908 호, 2015.10.28.), 강등처분기간에 승급제한 되도록 규정 개정

현 행	개 정 안	비 고(개정사유 및 의견 등)
<p>제40 조의2(포상제한) ① (생략) 1.~ 2. (생략) 3. 징계처분 등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가. 경고, 훈계 : 3월(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적용) 나. 견책 : 6월(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적용) 다. 감봉 : 1년 라. 정직 : 1년 6월</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4.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생략)</p>	<p>제40 조의2(포상제한) ①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p> <p>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강등, 정직 : 1년 6월</p> <p>4. 제3호에도 불구하고 채용비위 관련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p> <p>5. (현행 제4호를 제5호로 함) ② (현행과 같음)</p>	<p>-일상감사 의견을 수용하여(행정감사팀-2908호, 2015.10.28.), 강등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포상제한 규정화</p> <p>-채용비위 관련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 처분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포상을 제한하는 규정 마련</p> <p>* 서울시장방침-349호(2014.12.10.) 「투자·출연기관 혁신방안」</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년수, 정기승급 및 승급제한 적용례) 제22조제3항, 제24조제3항, 제2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채용비위자 포상제한 적용례) 제40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p>	

社 規 審 議 委 員 會	
審 議 番 號	第 4 號

심 의 안 건	인사규정시행내규(안)
---------	-------------

입 안 부 서	인사팀
---------	-----

인사규정시행내규 개정안 제안요지

1. 개정이유

- (채용관련) 채용 시에 직무능력검사를 필기시험에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등 채용제도 개선 컨설팅 결과 중 공사에 도입하기 적합한 제안 사항을 반영하여 보다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징계관련) 채용, 승진, 전보 등 임용 인사 관련 부당한 행위자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규정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채용관련)

- 적성(인성)검사를 인성검사로 대체(안 제8조 제1항 등), 직무능력검사를 필기시험에 포함(제9조 제1항 별표)
 - 현행 제도 상 필기시험 이후 적성(인성)검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는 직무능력검사를 필기시험에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검정하는데 유용한 시험도구로 활용하고자 함.
 - 현행 적성검사 대신 실질적인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하는 직무능력검사를 실시하며, 이에 따라 적성(인성)검사는 협조성, 윤리성 등을 검정하는 인성검사로 대체.
- 공사에 적합하고 역량있는 인재를 선발하고자 응시자를 대면하여 평가할 수 있는 면접시험의 반영비율을 40%에서 50%로 상향 조정(안 제13조 제5항)
- 신원조사에 의한 신원진술서 구비는 법령 상 근거가 없으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업무를 결격사유조치로 대체(안 제15조 제6호 삭제, 안 제15조의2 신설)

(징계관련)

- 서울시「투자출연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주요추진과제로서 비위채용자의 응시자격 박탈 조항 신설(안 제14조 제5항 신설)
- ‘투자.출연기관 혁신방안’(서울시장방침 제349호,2014.12.10.)에서 요구한 언어폭력 행위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제61조 제1항 별표 11)
- 채용, 승진, 전보 등 임용 인사 관련 부당하게 개입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기준의 구체적 마련 및 입찰비리 관련자 중징계 처벌 강화(안 제61조 제1항 별표 11의2)
 - ‘투자.출연기관 혁신방안’(서울시장방침 제349호, 2014.12.10.), ‘2015년도 서울시「투자출연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대비 주요추진과제’(행정감사팀-1455호, 2015.5.20.),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내규 개선권고’(행정감사팀-2191호, 2015.8.12.)에서 지적되고, ‘2015년 인사팀 사장업무보고’(2015.2.6.)에서 이행하기로 한 채용 등 임용 인사 비리 해소 방안 마련.
 - 직원이 채용 관련 부당한 인사 개입 또는 청탁한 경우에는 강등 이상의 중징계, 채용 외의 임용(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인사 개입 또는 청탁한 경우에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처분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부당행위를 방지하며 청렴성을 제고하고자 함.
 - 입찰비리 관련자에 대하여 감봉 이상에서 정직 이상으로 처벌 강화.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대비 주요추진과제’(행정감사팀-1455호, 2015.5.20.)관련하여 부패공직자 처벌 강화를 위해 직무상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의례적인 금품.향응수수의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을 서울시 주요 투자기관과 같이 구체화(안 제61조 제3항 별표 11의4)
- ‘투자.출연기관 혁신방안’(서울시장방침 제349호,2014.12.10.)에서 강조된 성희롱 가해자 징계처분 강화를 위해 징계 감경 제외 대상자에 성희롱 가해자 등을 추가하여 직장 내 건전한 문화 조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3조 제2항)

3. 참고사항

-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6조 제1항
 - 서울시 산하 17개 투자출연기관 자체 감사기구 운영실태 및 감사 규정 점검결과 처분 사항(서울시 경영감사담당관-9775호, 2013.10.17.)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합 의 : 해당없음
- 절 차 : 사장결재 후 사장명의로 공포.시행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개정사유 및 의견 등)
<p style="color: blue; font-weight: bold;"><채용관련></p> <p>제 8 조 (전형의 방법) ① 공개채용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실기시험, <u>적성(인성)검사</u>, 면접시험, 신체검사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실시하며, 전(앞)단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를 검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의 단계를 일부 생략하거나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일정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p> <p>1.~2. (생략)</p> <p>3. <u>적성(인성)검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인성)을 검사하며, 필요시 직무능력검사를 병행할 수 있다.</u></p> <p>4.~6. (생략)</p>	<p>제 8 조 (전형의 방법) ① -----, <u>인성검사</u>, -----</p> <p>-----</p> <p>-----</p> <p>-----</p> <p>-----</p> <p>-----</p> <p>-----</p> <p>1.~2. (현행과 같음)</p> <p><u>3. 인성검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성을 검사한다.</u></p> <p>4.~6. (현행과 같음)</p>	<p>○ 직무능력검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검정하는데 유용한 시험도구이므로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기시험에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p> <p>－ 적성검사 대신, 현재 필요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직무능력검사를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하게 하고, 이에 따라 적성(인성)검사는 협조성, 윤리성 등을 검정하는 인성검사로 대체(같은 내규 개정안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1)</p>
<p>제 9 조 (필기시험 과목 및 출제수준) ①(생략)</p>	<p>제 9 조 (필기시험 과목 및 출제수준) ①(현행과 같음)</p> <p><u>※ 본문 개정없이 별표1 개정</u></p>	<p>○ 필기시험의 필수과목에 직무능력검사를 신설</p> <p>○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검정에 적합성이 떨어지고 단순 암기 위주인 상식과목을 필수과목에서 제외</p> <p>○ 최근 신규채용에서 영어 과목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여 왔으므로 현황에 맞게 관련 사항을 별표에 규정화</p>

현 행	개 정 안	비 고(개정사유 및 의견 등)												
<p>제 13 조 (합격자 결정)</p> <p>① ~ ② (생 략)</p> <p>③적성(인성)검사는 사장이 정하는 적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합격자로 한다.</p> <p>④ (생 략)</p> <p>1.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실기시험 합격자중 적성(인성)검사의 적격자에 한하여 아래사항을 평가하되, 면접위원이 평가한 평정점중 최상 및 최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정점의 평균점수에 별표2에 의한 가산점수를 부가하여 만점의 60%이상을 득점한 자중 고득점자 순으로 사장이 정하는 인원을 합격자로 결정한다.</p> <p>가. 공사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p> <p>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p> <p>다.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판단력</p> <p>라. 예의, 품행 및 성실성</p> <p>마.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p> <p>바. 기타 필요한 사항</p> <p>2. (생 략)</p>	<p>제 13 조 (합격자 결정)</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인성검사는----- -----.</p> <p>④ (현행과 같음)</p> <p>1. ----- -----인성검사의 적격자에 한하여 사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을 평가하되,----- ----- ----- ----- -----.</p> <p>가. <삭 제></p> <p>나. <삭 제></p> <p>다. <삭 제></p> <p>라. <삭 제></p> <p>마. <삭 제></p> <p>바. 기타 필요한 사항</p> <p>2. (현행과 같음)</p>	<p>○ 같은 내규 제8조의 개정안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p> <p>○ 채용제도 개선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면접시험 평가사항을 사장이 정하도록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5가지 항목이 규정화되어 있어 지원자의 다양한 역량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현행 규정에 따른 제약 때문에 실무자와 관리자 면접으로 동일 요소가 2번 중복평가 됨 - 면접시험 평가사항은 직원 역량모델링 등 결과 및 인재상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점, 필요 시 다양한 면접 방법에 의해 공사가 필요로 하는 역량을 평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평가사항을 사장이 정하도록 개선 <p>※ 채용제도 컨설팅 결과 제시된 면접 평가사항</p> <table border="1" data-bbox="1514 1023 2128 1230"> <thead> <tr> <th>실무자 면접 평가사항</th> <th>관리자 면접 평가사항</th> </tr> </thead> <tbody> <tr> <td>전문성</td> <td>자기희생정신</td> </tr> <tr> <td>의사소통</td> <td>사회적책임감</td> </tr> <tr> <td>업무완결성</td> <td>개방성</td> </tr> <tr> <td>협조성</td> <td>윤리성</td> </tr> <tr> <td>개방성</td> <td>-</td> </tr> </tbody> </table>	실무자 면접 평가사항	관리자 면접 평가사항	전문성	자기희생정신	의사소통	사회적책임감	업무완결성	개방성	협조성	윤리성	개방성	-
실무자 면접 평가사항	관리자 면접 평가사항													
전문성	자기희생정신													
의사소통	사회적책임감													
업무완결성	개방성													
협조성	윤리성													
개방성	-													

현 행	개 정 안	비 고(개정사유 및 의견 등)
<p>⑤ 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 합격자중에서 총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필기시험(실기시험) 점수 60%, 면접시험 점수 40%로 하여 합산점의 고득점자순(필기시험·실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 면접시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하되, 동점자가 있는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성적, 저연령자순으로 순위를 정하여 사장이 확정한다.</p>	<p>⑤ -----필기시험(실기시험) 점수 50%, -----<u>면접시험 점수 50%</u>로 하여-----</p>	<p>○ 공사에 적합하고 역량있는 인재를 선발하고자 응시자를 대면하여 평가할 수 있는 면접시험의 반영비율을 40%에서 50%로 상향 조정</p>
<p>제 15 조 (구비서류) 직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u>신원진술서 3통</u> 7. ~ 11. (생략)</p>	<p>제 15 조 (구비서류) 직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6. <삭제> 7. ~ 11. (현행과 같음)</p>	<p>○ 공사가 임용하려는 직원에 대하여 경찰서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 회보받는 신원진술서는 법령상 근거가 없고, 개인정보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관련 기관의 의견(수서경찰서 정보보안과-972, 2014.4.2., '신원조사 의뢰자에 대한 반송')에 따라 임용구비서류에서 신원진술서를 삭제</p>
<p><신설></p>	<p><u>제 15 조의2 (결격사유조회) 직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관리하는 회보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조회 회보서를 받을 수 있다.</u></p>	<p>○ 신원진술서를 받는 신원조사 대신, 안전행정부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 개정(안),2014.4'을 준용하여 임용대상자 등록기준지에 의뢰하는 결격사유조회를받을 수 있도록 규정화(인사팀-2285, 2014.5.7., '신원조회업무 개선')</p>

현 행	개 정 안	비 고(개정사유 및 의견 등)	
<p><징계 관련> 제 14 조 (임용대상자 등록등) ① ~ ④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 14 조 (임용대상자 등록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비위채용자는 즉시 합격 취소되고, 향후 공사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p>	<p>-비위채용자 합격 취소 및 응시자격 박탈 조항 신설 -관련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장방침-349호(2014.12.10.) 「투자·출연기관 혁신방안」 · 행정감사팀-1455호(2015.5.20.) ‘2015년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계획」’ 	
<p>제 61 조 (징계양정기준) ① (생략)</p> <p>② (생략)</p> <p>③ (생략)</p>	<p>제 61 조 (징계양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 본문 개정없이 별표 11, 11의2 개정</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 ※ 본문 개정없이 별표 11의4 개정</p>	<p>-(별표11)징계양정기준 개정 · 상습적인 언어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성희롱 비위에 준하는 처벌을 하도록 징계양정기준 마련 -(별표11의2)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 개정 · 직원이 채용 관련하여 부당한 인사 개입을 하거나 특정인의 채용을 위하여 청탁을 하는 경우에 강등 이상의 중징계 처분하는 근거를 마련 · 채용외의 임용(승진, 전보 등) 관련하여 부당한 인사 개입을 하거나 청탁을 하는 경우에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하는 근거 마련 ※ ‘임용’의 정의는 인사규정 제3조 제1호를 적용</p> <table border="1" data-bbox="1514 815 2130 946"> <tr> <td> <p>인사규정 제 3 조 (용어의 정의) (생략)</p> <p>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전보, 전직, 겸임, 강임, 강등,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p> </td> </tr> </table> <p>· 입찰비리 관련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감봉 이상→정직 이상)하여 청렴도 향상</p> <p>-(별표11-4)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 개정 · 부패공직자 처벌 강화를 위해 직무상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의례적인 금품·향응수수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별표 개정 ·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에서 중징계·경징계로 규정된 징계의 종류를 구체화하여 금품·향응수수 부패행위 엄벌 ※ 서울시,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시설공단 등 주요기관의 금품·향응수수 부패행위자 처리기준이 파면,해임 등 징계양정으로 구체화되어 규정됨</p>	<p>인사규정 제 3 조 (용어의 정의) (생략)</p> <p>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전보, 전직, 겸임, 강임, 강등,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p>
<p>인사규정 제 3 조 (용어의 정의) (생략)</p> <p>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전보, 전직, 겸임, 강임, 강등,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p>			

안 행	개 정 안	비 고(개정사유 및 의견 등)
	<p>제3조(임용대상자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제5항의 개정내규는 이 내규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비위채용자부터 적용한다.</p> <p>제4조(징계양정기준 및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11, 별표 11의2, 별표 11의4의 개정내규는 이 내규 시행 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내규를 적용한다.</p> <p>제5조(성희롱, 성매매 비위자에 대한 징계의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2항의 개정내규는 이 내규 시행 후 최초로 징계 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p>	

< 현 행 >

<별표 1(제9조 관련)>

직원공개채용시험과목

직 종	필수과목	선 택 과 목	비 고
사무직	영 어 상 식	법학, 행정학,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 전산 학 (사장이 별도로 정함)	
기술직	영 어 상 식	당해 직렬별 관련과목 (사장이 별도로 정함)	
관리사무직 및 관리기술직	영 어 상 식	당해 직렬별 관련과목 (사장이 별도로 정함)	

< 개정안 >

<별표 1(제9조 관련)>

직원공개채용시험과목

직 종	필수과목	선 택 과 목	비 고
사무직	영 어 <u>직무능력시험</u>	법학, 행정학,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 전산학 (사장이 별도로 정함)	<u>영어를 제외한 필기시험의 직무능력시험과 선택과목의 과목별 득점 반영비율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u>
기술직	영 어 <u>직무능력시험</u>	당해 직렬별 관련과목 (사장이 별도로 정함)	
관리사무직 및 관리기술직	영 어 <u>직무능력시험</u>	당해 직렬별 관련과목 (사장이 별도로 정함)	

※ 영어시험은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 현 행 >
 <별표 11(제61조 관련)>

징 계 양 정 기 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 침해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라. 기타	파 면 파 면 파 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 임 해 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 봉	정직-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 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기타	파 면 파면-해임	해 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 봉	감봉-견책 견 책
3. 직장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이탈 나. 무단결근 다. 기타	파 면 파 면 파면-해임	해 임 해 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 봉	감봉-견책 견 책 견 책
4. 친절공정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5. 비밀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따른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라. 개인정보 무단 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등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 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 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 직 정직-감봉 감 봉 감 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 책 견 책
6. 청렴의무 위반	파 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나. 그 밖의 성폭력 다. 성희롱, 성추행, 성매매 라. 기타	파 면 파 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 임 해 임-강등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 봉	정직-감봉 감봉-견책 견 책 견 책
8.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 면	해 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 면	해 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1. 청렴유지 등을 위한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파 면	해 임-강등	정직-감봉	견 책

※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며,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 개정안 >

<별표 11(제61조 관련)>

징 계 양 정 기 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 침해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라. 기 타	파 면 파 면 파 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 임 해 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 봉	정직-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 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기타	파 면 파면-해임	해 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 봉	감봉-견책 견 책
3. 직장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이탈 나. 무단결근 다. 기 타	파 면 파 면 파면-해임	해 임 해 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 봉	감봉-견책 견 책 견 책
4. 친절공정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5. 비밀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따른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라. 개인정보 무단 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등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 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 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 직 정직-감봉 감 봉 감 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 책 견 책
6. 청렴의무 위반	파 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나. 그 밖의 성폭력 다. 성희롱, 성추행, 성매매 라. 상습적인 언어폭력 마. (현행 라목과 같음)	파 면 파 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 임 해 임-강등 해 임-강등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정직-감봉 정직-감봉 감 봉	정직-감봉 감봉-견책 견 책 견 책 견 책
8.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 면	해 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 면	해 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1. 청렴유지 등을 위한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파 면	해 임-강등	정직-감봉	견 책

※ 비교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며,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 개정안 >

<별표 11의2(제61조 관련)>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

구분	징계사유	징계기준					비고
		과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1. 부무 및 품위	1.~6. (현행과 같음) 7.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가. 직무수행 기본자세의 중대한 위반행위 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등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 다. 알선·청탁 및 특혜 등 이권개입 금지의무 위반행위 (1) 하도급 관여 및 청탁 (2) 자재 선정 알선 및 청탁 (3) 채용 관련 부당한 인사 개입 또는 청탁 (4) 채용외의 입용 (승진, 전보 등) 관련 부당한 인사 개입 또는 청탁 (5) 그 밖의 알선·청탁 및 특혜 등 이권개입 라. 직무관련 정보를 악용한 거래 금지의무 위반행위 마.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 부동산 임차금지 의무 위반행위 바. 공용물의 사적사용 및 수익 금지의무 위반행위 사. 외부강의 신고의무 및 대가기준 준수 위반 중 중대한 위반 행위 아.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위반행위 자. 신고자의 신분보호의무 위반행위 차. 기타 중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 ○	○	○	○ ○	
	2. 금품·향응수수 등 가.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 수수(수정입안) 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 다.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라.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청탁으로 금품중개 행위 마. 직무관련 정보제공 등 업무편의 조건으로 금품중개 행위		○	○			
3.(생략)							
4.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1. 예산, 회계사무의 부적정 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나. 예정가격 누설 다. 예정가격조사의 위법·부당 작성 라. 위법·부당 입찰 및 낙찰 마. 물품 및 공사의 부당 분할발주계약 등 위법·부당 계약 바. 위법·부당한 검수 및 검사 사. 위약금의 미징수 기타 손실 초래 아. 허위 지출증빙서 작성 자. 공과금의 부당 관리 차. 기타 회계상의 부정				○ ○	○ ○ ○ ○ ○	
5~7(생략)	(현행과 같음)						

< 현 행 >
 <별표 11-4(제61조 관련)>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

비위유형	금 액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수수행위		
직무 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	수 동	경징계	중징계
	능 동	중징계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	수 동	경징계·중징계	중징계
	능 동	중징계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 동	중징계	중징계
	능 동		

* 중징계 : 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 : 감봉.견책

< 개정안 >

<별표 11-4(제61조 관련)>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

비위유형	금 액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수수행위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	수 동	감봉	해임·파면
	능 동	정직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	수 동	감봉·정직	해임·파면
	능 동	정직·해임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 동	해임·파면	파면
	능 동		

* <삭 제>